

집중수업 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18. 3. 1.

□ 개정 : 2020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원과학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25조의 제2항에 따라 집중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집중수업”이란 학칙 제25조2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집중식 수업, 블록식 수업 등과 같이 단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② “집중수업 과목”이란 집중수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③ 계절학기 개설과목과 현장실습은 본 규정의 집중수업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다.

제3조(수업개설)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“집중수업개설신청서”를 작성하여 교무과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집중수업은 정규학기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, 하계·동계 학기에는 개설할 수 없다.

제4조(운영방법) ① 집중수업 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달성과 수업의 효율을 감안하여 강의시간표를 편성해야 한다.

② 집중수업 과목의 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강신청자들의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삭제 <삭제 : 2020.3.13.>

④ 집중수업 기간에 속한 휴일에 대해 대학이 지정한 보강일에 보강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,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.

제5조(강의시수 인정) 집중수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강의시수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

제6조(강의료 지급) 집중수업에 대한 강의료는 운영기간과 관계없이 15주 강의로 환산하여 계산해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, 학칙시행세칙, 교무학사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, 관련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

5-0-19 집중수업 운영 규정

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20 학년 학기 집중수업 개설신청서

학과		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<input type="checkbox"/> NCS기반
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역량기반	
학년	과목명	학점	시수		담당교수
			이론	실습	

※ 집중수업의 기대효과

-
-
-
-

20 년도 학기 집중수업 개설을 신청합니다.

2020년 3월 27일

학과장: (인)